

< 지원방안 >**Q1. 개사육농장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대상, 내용 등)은?**

- 지원대상은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사육농장주임
 - 다만,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될 지원기준에 따라 일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촉진금* 및 시설 철거, 시설물 잔존가액, 전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 * ①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면적을 상한으로 하되, ②운영신고서의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보조 기준으로 하여 산정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4.9월 마련될 예정인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

Q2.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건강원)의 전·폐업 지원 방안은?

- 전반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는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후 정해질 예정

Q3. 지위 승계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 개식용종식법 공포 이후('24.2.6.) 지위 승계(영업주 변경)는 신규 진입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개식용종식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Q4.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원기준 확정 전에 폐업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지원은 예산 편성 이후 ('25년 이후) 가능

< 신고 접수 및 수리 - 신고 대상 >

Q5.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개식용 업체)는 모두 신고 대상
 - 다만,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포일('24.2.6) 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체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

Q7. 여타 법(가축분뇨법,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농가 및 사업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여타 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영업 중인 개식용 업체는 모두 신고 대상

Q8. 소규모 식용 개 사육 농가도 신고 대상인지?

-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육 규모와 무관하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 중인 식용 개 사육 농장은 모두 신고 대상임

Q9.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지?

- 본인 소유,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 종사자이면 신고 대상에 해당

Q10.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고 가능한지?

- 법 공포일('24.2.6.) 이전일 경우 신고 가능하나, 추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Q11. 개인이 자가소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개를 소규모 사육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 신고는 가능하나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Q12. 특별법 공포 이후('24.2.6.) 폐업한 경우 신고 접수 가능한지? 또한, 전·폐업 지원 대상인지?

- 법 공포일 이전부터 신고일자 기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가 신고 대상이며, 신고일자 이전 이미 폐업이 완료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 운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직접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지원기준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일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Q13. 식당 메뉴판에는 개고기가 있으나, 법 공포일 이전부터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 법 공포일 이전부터 신고일자 기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가 신고 대상임

Q14.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 지원대상 배제,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

< 신고 접수 및 수리 - 신고 내용 >

Q15. 사육마릿수 산정 기준은?

- 식용 목적 축종인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및 믹스견(출하체중 15~20kg 내외)을 포함하며, 성견이 아닌 개체도 모두 포함 대상
- 현재 사육마릿수는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최근 3년 평균('21~'23년)으로 산정
 - * 연평균 사육마릿수는 농가 구두답변 및 서류확인(농장 보유 출하영수증, 거래장부, 가축분뇨시설 신고서, 경영체등록자료 등)을 통해 확인

Q16. 실사육면적(케이지·평사)의 정확한 의미는?

- 실사육면적은 농장에서 실제 가축 사육에 활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
 - 농가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신고 시 사육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
 - * 보통 육견 농가의 경우 사육 케이지의 개당 면적×케이지의 개수 등으로 산정

Q17. 식품접객업 전체 매출 중 개고기 매출액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발급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내역)의 전체 원재료 구입 금액(음료·주류 제외) 대비 개고기 구입금액의 비율을 전체 매출액에 곱하여 개고기 취급 메뉴 매출액 계산

Q18. 개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자(즉석식품제조가공업 등)의 경우 운영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개소주 등 취급 건강원 등은 개식용 유통상인에 해당하며, 매출액, 수수료 등 세부 운영 사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제출 내용은 영업자의 책임 하에 객관적인 증거가 가능해야 함)

< 신고 접수 및 수리 - 증빙자료 및 조사 >

Q19. 신고서 양식 내 제출 내용은 어떻게 증빙하는지?

- 농장 및 영업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출하 영수증, 거래장부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신고서·경영체 등록자료 등 제출 내용에 대해 증빙 가능한 모든 서류, 기록 등을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운영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지 못한 증빙자료는 신고서 수리 전 현장조사를 통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

Q20.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 증빙자료 제출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신고 내역에 대해 증빙 가능한 수기 자료(거래장부 등),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여 신고서 제출
 - 증빙자료 없이 신고서 제출은 가능하나, 신고서 수리를 위한 현장 조사 등 검토 과정 중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서 수리가 거부될 수 있음
 - 또한, 향후 전·폐업 지원 관련 제출한 서류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21. 신고서 서식 중 하단에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 증빙서류 없이 제출은 가능하나, 신고서 수리 관련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출입·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22. 신고 수리 완료 후 증빙자료 추후 보완 가능한지?

- 개식용종식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 수리 완료 후에도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관계 서류 검사 및 확보 가능

Q23.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신고서 수리 시 증빙서류는 어떤 걸 첨부해야 하는지?

- 국세청 발급 서류* 및 이와 연관된 수기 자료 일체
 - *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매출내용지출증빙, 부가세과세표준증빙 등
 -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수기자료(거래장부 등)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여 신고서 제출
 - 단, 증빙자료 미제출 시 향후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Q24. 식품접객업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 수리는 가능한지?

- 객관적 증빙(국세청 발급 서류) 외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 내역에 대해 확인 가능한 수기자료, 현장사진 등의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리 가능
 - 다만, 영업자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Q25.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대해 시·군 공무원이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하는지?

-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사실 확인 및 정확한 지원규모 산정을 위해 시·군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신고 접수 및 수리 - 기타 >

Q26. 영업지역이 여러 시군구를 걸쳐 있는 도축·유통업의 신고서 접수 관할 지역은 어디인지?

- 신고서는 사업장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에 제출

Q27.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지원기준 마련 후)이 가능한지?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나, 이행계획서는 제출 후 '25.2월까지 수정 가능*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2024-14호

Q28. 타 업종 겸업 시 신고서 제출 방법은?

-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개별 작성 후 해당 부서 제출

< 이행계획서 >

Q29. 현재 지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계획은?

-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나, 이행계획서 제출 후 '25.2월까지 수정 가능*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2024-14호

Q30. 식품접객업의 전·폐업의 정확한 기준은?

- 메뉴에서 개고기를 제외하기만 해도 전업으로 인정

< 기타 >

Q31. 법 제10조제5항에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양식이 있는지?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2024-14호) 개정을 통해 관련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진행 중(4.5~4.25)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